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26호 2017. 10. 24.(화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7-19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— 2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7-1128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보완 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촉구 및 연장 처리 알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-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26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7 - 195호

공유수면 점용.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.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. 10. 23.

사 천 시 장

1. 점용.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 : 제2016-6호(2016. 10. 31.)
2. 점용.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(공사완료신고서)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(사)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경남지부 최해용 외1(사)퍼스트 마린가이드
 - 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(덕산동)
3. 공사 내용
 - 부교 및 잔교 설치
4. 점용.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대포동 457-12번지 지선 공유수면
5.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
 - 2017. 10. 20.

사 천 시 공 보

제526호(3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7 - 1128호

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보완 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촉구 및 연장 처리 알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3조(사업계획 승인)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(민원문서의 보완·취하 등)에 따라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 이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(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)제3항에 따라 이행 촉구 및 기한 연장을 재차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**공고제목** :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보완 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촉구 및 연장 처리 알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** : 2017.10.24.~2017.11.09. (16일간)
3. **공고대상**
 - 경남 사천시 두량리 1278-7번지 현수산업 김*수(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***)
4. **법적근거** 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 제3항

사 천 시 공 보

제526호(4)

5. 의견제출 : 사천시청 산업단지과 (☎055-831-3463)

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(민원문서의 반려 등)에 따라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0월 24일

사 천 시 장